

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06 호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3. 23.

발 의 자 : 최을석의원의외 4인

1. 개정이유

고성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서 중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과를 둔다. (안 제3조 제2항 제1호)

나.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 (안 제3조 제2항 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근거
 -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장 제13조
- 예산조치 : 불필요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, 주민생활과”를
“기획감사실, 주민생활과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”로 하고, 동조동항
제2호 중 “상하수도사업소 소관”을 “상하수도사업소, 생명환경농업연구
소 소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 <u>기획감사실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, 주민생활과, 문화관광과, 보건소, 관광지사</u> 업소,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2.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, 환경과, 녹지공원과, 해양수산과, 건설재난과, 도시개발과, 특구지원과,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, 농업지원과, 농축산과), <u>삼하수도사업소 소관</u>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1. ----- <u>기획감사실, 주민생활과, 행정과, 재무과, 종합민원실,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삼하수도사업소,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